

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9]

업무 종류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(제43조제2항 관련)

구분	단위	수수료	근거 법조문
1.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의 발급 신청	1건당	3천 원	법 제58조제1항제2호
2. 해양조사·정보업의 등록 신청	1건당	2만원	법 제58조제1항제3호
3. 해양조사·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·정보업 등록수첩의 발 급 신청	1건당	2천 원	법 제58조제1항제4호
4. 해양정보간행물을 복제한 제작물 의 발행 또는 해양정보간행물과 비 슷한 제작물의 발행에 대한 승인 신청	1건당	2천 원	법 제58조제1항제7호